

제02201600075호

## 학원 설립 · 운영 등록증

1. 목 적 : 학교교과 보통교과목 보완교육
2. 명 칭 : 샘토링원격학원(samtoring.com)
3. 설 립 자 : (주)커스트리
4. 위 치 : 마포구 토정로35길 11 인우빌딩 5층 115호
5.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: 학교교과교습학원, 보습(원격)
6. 일시수용인원 : 제한없음
7. 정 원 : 제한없음

학원의 설립 ·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원으로 등록하였습니다.

2016년 6월 23일

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



### 【유의사항】

1.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, 학원운영은 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.
2. 이 증서는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, 등록말소, 폐원 시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.
3. 강사 임용과 해임 시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여야 하며,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및 벌점이 부과됩니다.

# 학원원칙

## [보습(원격)학원]

제1조(목적) 이 학원은 보습(원격)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학원은 샘토링원격학원(samtoring.com)이라 한다.

제3조(위치) 이 학원은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5길 11 인우빌딩 5층 115호 에 둔다.

제4조(일시수용인원) 이 학원의 일시수용인원 및 정원은 다음과 같다.

교습과정	교과목	일시수용인원		정원
학교교과교습학원 (보습)	고등수학	제한없음	제한없음	제한 없음
총 계		제한없음	제한없음	제한 없음

제5조(교습과정) 이 학원의 교습과정은 다음과 같다.

교습과정	1일 교습시간	수료기간 (강)	교 과 목		비고
			과목명	총이수시간(분)	
학교교과교습학원 (보습)	60분	1개월	고등수학	1,008분 ~ 1,260분	주4회 ~ 주5회

제6조(수료) ① 이 학원의 수료인정은 출석일수, 이수시간 및 평상시의 성적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②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및 이수시간은 제5조에 규정한 수료기간 및 총 이수시간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.

제7조(휴강일) ① 이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.

1. 국경일 및 공휴일
2. 정기휴일
3. 개원기념일

②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변, 특별한 사유, 기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강을 할 수 있다.



③ 휴강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교습할 수 있다.

#### 제8조(교습비등)

- ① 이 학원의 교습비등은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한다.
- ② 이미 납입된 교습비등 중 수강하지 않은 월의 교습비등은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한다.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습비등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.
  1. 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
  2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습비등의 납입이 곤란한 자
  3. 보훈대상자나 그 자녀
  4. 해당 교습과목에 재능이 탁월한 자 등

제9조(시행세칙) 이 원칙 시행 상에 필요한 세칙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원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4]

## 교습비등 반환기준(시행령 18조제3항)

구 분		반환사유 발생일	반환금액
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		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
제18조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	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
		총 교습시간의 1/3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전	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		총 교습시간의 1/2경과 후	반환하지 않음
	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교습 시작 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		교습 시작 후	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		<p>1.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2.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(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</p>	